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8호 2021. 1. 7.(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4
- 사천시 고시 제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5
- 사천시 고시 제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6
- 사천시 고시 제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8
- 사천시 고시 제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9
- 사천시 고시 제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10
- 사천시 고시 제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11
- 사천시 고시 제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12
- 사천시 고시 제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13
- 사천시 고시 제20호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 1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1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16
- 사천시 공고 제22호 조례 제정과 폐기 청구권자 총수 공표----- 17
- 사천시 공고 제23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18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
- 사천시 공고 제2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사천시 공고 제2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4호 (2020. 03.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목제데크 설치, 옹벽블록 설치, 보행매트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5-1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사항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실시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허가일자) : 제2016-7호 (2016.11.16.)
2.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호안 피복석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사항
  - 기존 :
    - \* 승인번호 : 제2016-7호 (2016.12.20.)
    - \* 공사기간 : 2018.08.20.~2020.12.31.
    - \* 공사내용 : 호안 피복석 설치
  - 변경 :
    - \* 승인번호 : 제2020-14호 (2020.12.29.)
    - \* **공사기간 : 2018.02.20.~2021.12.31.**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 기간 연장)
    - \* 공사내용 : 호안 피복석 설치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1호 (2019. 03. 1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실안동 1096-38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2호 (2019. 03. 1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늑도동 502-13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3호 (2019. 03. 1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526-15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19호 (2019. 11. 11.)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노룡동 9753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5호 (2020. 04. 23.)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산분령항 물양장 정비 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실안동 1096-28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29.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9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9-6호 (2019. 4. 11.)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하봉항 선착장 연장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81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15호
  - 공사기간 : 2019.05. ~ 2020. 12.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12.29.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6호 (2020. 4. 28.)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늑도동 557-4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14호
  - 공사기간 : 2020.06. ~ 2020.12.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05.07.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1호 (2020. 03.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79-13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30.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2호 (2020. 03.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79-11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30.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3호 (2020. 03.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마도동 79-10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30.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01. 07.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8호 (2019. 04. 30.)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신수동 227-1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2. 30.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고시 제2021 - 20호

##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중촌항)
2. 사업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중촌항 일원
3. 계획의 범위 : 20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낙후된 어촌, 어항을 통합하여 활성화시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어촌, 어항재생사업’임.
  - 생업공간인 어항과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3년간)
- 총사업비 : 7,283백만원(국비 5,098, 도비 656, 시비 1,529)
- 사업계획의 개요
  - 어항시설정비 :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부잔교 설치, 경사식선착장, 어장진입로, 굴작업장, 해수소통구, 디자인등부표, 등대, CCTV, 가로등
  - 어민복지시설 : 다목적센터, 쉼터조성
  - 환경개선사업 : 해안도로포장, 안내판설치

## 6.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Tel : 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중촌항)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서포면	자혜리	908-28	제	152	10	사천시	방파제 연장 해수소통구, 등대
2	서포면	자혜리	908-27	제	260	10	사천시	물양장 확장
3	서포면	자혜리	908-26	잡	949	949	사천시	CCTV, 가로등 다목적센터
4	서포면	자혜리	908-21	도	4,580	3,000	국토교통부	해안경관로포장
5	서포면	자혜리	산80-1	도	24,222	10	경상남도	안내판설치
6	서포면	자혜리	1098-1	도	209	10	사천시	
7	서포면	자혜리	991	도	619	10	사천시	
8	서포면	자혜리	산137-3	도	1,873	10	사천시	
9	서포면	자혜리	산153-7	도	514	10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21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 고
합 계	내국인	외국인		
93,787	93,700	87	10,421	청구권자 총수의 1/9 이상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22호

##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단위 : 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 고
합 계	내국인	외국인		
93,770	93,700	70	1,876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23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사천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 ■ 시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15/100)	읍·면·동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계	93,595			
사 천 읍	14,961	14,040	936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5개 읍·면·동 이상에서 읍·면·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정 동 면	10,228		936	
사 남 면	11,744		936	
용 현 면	6,363		936	
축 동 면	1,526		229	
곤 양 면	3,119		468	
곤 명 면	2,693		404	
서 포 면	3,350		503	
동 서 동	5,974		936	
선 구 동	4,638		696	
동 서 금 동	5,551		833	
별 용 동	12,908		936	
향 춘 동	5,898		885	
남 양 동	4,642		697	

# 사 천 시 공 보

제 708 호

## ▣ 시의회 의원

(단위 : 명)

자치단체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동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투표 청구요건
시·군	선거구	읍·면·동				
계			93,595			
사천시	가선거구	계	43,296	8,660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사 천 읍	14,961		433	
		정 동 면	10,228		433	
		사 남 면	11,744		433	
		용 현 면	6,363		433	
	나선거구	계	10,688	2,138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축 동 면	1,526		107	
		곤 양 면	3,119		107	
		곤 명 면	2,693		107	
		서 포 면	3,350		107	
	다선거구	계	15,254	3,051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동 서 동	5,974		153	
		선 구 동	4,638		153	
		남 양 동	4,642		153	
	라선거구	계	24,357	4,872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동서금동	5,551		244	
		별 용 동	12,908		244	
		향 촌 동	5,898		244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해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보험 가입대상과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 708 호

##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3312, FAX: 831- 6036)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장범위)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사망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제5조(보험금 신청)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관 련 법 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2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 월 8만원 ⇒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과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나. 올바른 약칭의 사용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1,

FAX: 831-6022)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과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u>사천시</u>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 ① -----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u>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u></p> <p>4.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u> -----</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관 련 법 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 □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절차·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2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5만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1,

FAX: 831-6022)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단체 예산지원)”을 “(단체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시설건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순례비 등 지원”을 “순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비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제7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 을 “(복지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창달” 을 “발전” 으로 한다.

제9조 중 “창달” 을 “발전” 으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를 “관계기관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만원” 을 “5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고” 를 “한정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 를 “시” 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일로부터” 를 “신청일부터” 로, “이내” 를 “이내에” 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을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희생·공헌자”라 함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u>대한민국의</u>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라. (생략)</p> <p>2. <u>“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u>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u>“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u>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u>의한</u>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u>의하여</u>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p> <p>제6조(<u>단체 예산지원</u>) <u>단체에 대한 지</u></p>	<p>제2조(정의) ----- -----.</p> <p>1. <u>“희생·공헌자”란</u> ----- ----- -----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대한민국</u> ----- -----</p> <p>라. (현행과 같음)</p> <p>2. <u>“국가보훈대상자”란</u> ----- ----- ----- -----.</p> <p>3. <u>“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u> ----- ----- -----.</p> <p>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u>따른</u> ----- ----- <u>따라</u> ----- -----.</p> <p>제6조(<u>단체의 지원</u>) <u>사천시장(이하</u></p>

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생략)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시설건립
2. ----- 순례
3. ----- 사업
4. ----- 사업

제7조(복지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범위에  
서 -----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  
----- 발전  
-----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 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  
----- 발전 -----  
----- 관계기관에 -----  
-----  
-----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  
-----  
-----  
-----  
-----  
-----  
----- 따라 -----  
-----.

1. ----- 5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  
-----  
----- 한정하  
고-----.

③ -----  
----- 시-----  
-----.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  
----- 다음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 각 호에 따른 -----  
-----.

④ ----- 신청일부터 --- 이내 -----.

제14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  
-----  
-----  
-----.

1. (현행과 같음)
2. -----  
-----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

<삭제>

# 사 천 시 공 보

제708호

## 관 련 법 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